

# 한화솔루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(2020.05.12)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.
- ② 위원회는 ①항의 사외이사 후보자의 수락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의2제1항, 제542조의6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수가 본인의 거절 등의 사유로 선임예정인 사외이사 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하여 추천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4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이 사임,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②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

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## 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모사전송기(FAX), 유선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8 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

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의결권은 출석위원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 9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사외이사후보자의 결정
  - (2) 기타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12 조 (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 13 조 (간사)

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 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4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 3.3,1에 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
5.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